



법무장관실

워싱턴 디씨

2011년 2월 17일

공지사항 수신: 연방정부 기관장, 법무 기관장, 민권기관 단체장

발신: 법무장관

제목: 행정명령 제 13166 호에 따른 연방정부의 언어지원 의무
재천명

행정명령 제 13166 호¹는 2000년 8월에 공표되었으며, 본 공지사항은 동 행정명령의 수행 요건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동 행정명령에는 두 개의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동 명령은 모든 연방공공기관은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limited English proficient, LEP) 사람들이 자체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발 및 실행할 것을 지시합니다. 둘째, 동 명령은 연방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자체 기관의 법적 의무 대상자인 재정보조 수혜단체에게 이러한 지원에 관한 안내문을 공표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들이 1964년 민권법 제6 편에 있는 출신국가 비차별 조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기관과 단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규를 실행할 것을 지시합니다.

긴급사태이든 일상적인 업무 절차이든, 우리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반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의 성공여부는 정부가 발표하는 중요한 정보가 적시에 정확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에 달렸습니다. H1NI 신종 플루 대유행, 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리타, 멕시코만 기름 유출과 같은 사건 사고, 그리고 2010년의 10년 주기 인구조사 등은 연방기관들이 자체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활동과 연방재정보조 수혜단체들의 활동에서 언어지원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나타냅니다.

연방기관 및 연방재정보조 수혜단체들이 반드시 언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및 공공서비스 의무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실시된 연방정부 언어지원 설문조사에서는 연방기관에 따라 언어지원 원칙에 대한 의식, 관련 법규 준수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연방기관의 언어지원에 관한 연방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2010년 보고서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동 보고서는 언어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견의를 제공하였으며, 그 중 일부분은 미국 행정명령 제 13166 호의

¹ 65 Fed. Reg, 50, 121 (2000년 8월 16일)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개선하기 위해 본 공지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에 걸쳐 실시된 연방기관 간의 언어지원 회의는 미국 법무장관 공지사항
제목: 행정명령 제 13166 호에 따른 연방정부의 언어지원 의무 제천명
2 페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 연방정부는 특정 영역에서의 언어지원 제공에 있어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연방정부와 연방재정보조 수혜단체에 걸쳐 포괄적인 언어지원 프로그램은 아직 균형있게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행정명령 제 13166 호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확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고 행정명령 제 12250 호에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에 부여한 조정 권한에 따라 본인은 귀 기관이 다음 수행 항목을 실천함으로써 법무부와 동참하여 행정명령 제 13166 호를 충실히 실행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1) 귀 기관의 조직 구조를 반영하고 연방정부에서 진행하고 지원하는 행정명령 조항의 실행을 책임지는 언어지원 작업그룹 (Language Access Working Group)을 설립함.
- (2) 가장 자주 필요로 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원을 확인하고 LEP 커뮤니티와의 주요 연락 채널(전화, 직접 대면, 편지, 전자메일 등)을 찾아보며, 귀 기관의 언어지원 프로그램과 활동을 검토함으로써 귀 기관의 LEP 수요에 대한 현재의 반응을 평가하고 개선함.
- (3) 정기적으로 연방기관의 LEP 서비스와 LEP 정책, 계획, 관례 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계획표를 작성함. 이러한 규정을 수행하는 일차 단계로 본 공지사항이 공표된 일자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귀 기관이 개선한 LEP 계획과 정기적 LEP 계획 재평가 예상 계획표 및 관련 서류를 이전 명칭이 조정 및 검토과(Coordination and Review Section)인 법무부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 연방조정 및 규정준수과(Federal Coordination and Compliance Section)에 제출함.
- (4) 귀 기관의 모든 직원이 능숙하게 LEP 연락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보증함.
- (5) 귀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LEP 커뮤니티에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귀 기관의 LEP 정책, 계획, 절차, 그리고 LEP의 언어지원과 관련된 발전 현황 등을 대중에게 통보함. 연방조정 및 규정준수과가 귀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LEP.gov에 게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로 연결되는 링크를 연방조정 및 규정준수과에 제공함.
- (6) 직원 고용 기준을 고려할 때, 특정 직무 수행 또는 귀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구사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평가함.

(7) 서류 번역에 있어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연방정부 용어를 표준화하고 대량 전달용 서류의 전문 번역의 정확성 및 품질에 대한 커뮤니티의 피드백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

미국 법무장관 공지사항

3 페이지

제목: 행정명령 제 13166 호에 따른 연방정부의 언어지원 의무 재천명

(8) 연방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재정보조 수혜단체 안내서를 작성함. 주의할 점은, 이러한 재정지원은 확대 정의되어 지원금뿐만 아니라 장비, 부동산, 공정시장가격 이하의 임대료, 교육, 다른 형식의 지원 등도 포함됨. 아직 재정보조 수혜단체 안내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관들은 반드시 언어지원 의무 규준에 관한 안내서를 발행해야 하며, 본 공지사항이 공표된 일자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동 안내서를 법무부 민권국 연방조정 및 규정준수과에 제출해야 함. 연방재정지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보조 수혜단체 안내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기관들은 연방기관 언어지원 계획을 전송할 때 동 결정의 성명서를 첨부해야 함.² 연방자금지원 기관들은 또한 정규적으로 자금수혜단체들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강력한 기술지원 및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함.

법무부 민권국은 연방기관 통합 언어지원 서비스 자문위원회(Federally Conducted Committee of the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Limited English Proficiency)와 협력하여 2006년에 실시한 언어지원 설문조사와 같은 후속 설문조사를 통해 상기 수행 항목의 실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할 것입니다. 연방기관들은 2011년에 첫 번째 후속 설문조사가 실시될 것임을 주지해 주십시오.

귀 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본 공지사항의 부록에는 여러 가지 자료와 상기 수행 항목 중 일부에 대한 안내 링크 등 각종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행정명령 제 13166 호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지원이나 기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방조정 및 규정준수과의 특별법무관 크리스틴 스톤먼 (Christine Stoneman) 또는 바라티 벤카트라만 (Bharathi Venkatraman) 검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번호는 (202) 307-2222입니다. 귀 기관이 LEP 커뮤니티와 일반 대중 모두 연방정부의 자원과 서비스를 언제든지

² 연방 차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과 연관된 행정명령 조항에 따른 범위에 이의가 있는 기관들은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 LEP 개인과 연락한 숫자, 이러한 연락의 빈도, 성격 및 중요성 등을 명시한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함. 동 보고서에는 LEP 개인과의 전화연락, 직접 대면 연락, 편지, 그리고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한 연락 포함) 기타 일체의 상호연락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자체 기관이 LEP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이 설명되어야 함.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협력하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연방기관의 행정명령 제 13166 호 규정준수에 관한 법무장관 공지사항 보충자료

수행 항목 실행의 구체적 내용:

- (1) **수행 항목:** 각 기관은 자체 기관의 조직 구조를 반영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지원하는 행정명령 조항의 실행을 책임지는 언어지원 작업그룹을 설립해야 함.

구체적 내용: 언어지원 작업그룹은 장관 지명자 또는 해당 기관을 책임지는 장관급 관리 지명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LEP 코디네이터가 주재해야 함. 언어지원 작업그룹은 자체 기관의 여러 부서 또는 업무수행 사무실의 직원으로 구성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사무실의 직원이 포함되어야 함. 언어지원 작업그룹의 구성원들은 언어지원에 있어서 어떤 장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상담하며, 효율적인 언어지원을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는 전략 및 대응방법을 제정하고 자체 기관의 연방재정 지원 업무 활동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함. 그들은 또한 제정된 전략 및 대응방법의 실행을 책임져야 함. 언어지원 작업그룹의 설립과 담당 임무에 관한 내용을 자체 기관의 모든 직원에게도 통보해야 함.

- (2) **수행 항목:** 각 기관은 자체 기관에서 가장 자주 필요로 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원 확인, LEP 커뮤니티와의 주요 연락 채널 (전화, 직접 대면, 편지, 전자메일 등) 파악, 귀 기관의 언어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 검토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귀 기관의 LEP 수요에 대한 현재의 반응을 평가하고 개선해야 함.

구체적 내용: 각 기관은 현 시점의 언어지원 필요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언어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원조 활동, 자체 기관의 구체적인 임무와 관련된 기타 활동에 관한 내용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또한 각 기관은 자체 기관 내의 직원 및 외부 계약업체에 의한 언어지원 서비스, 번역된 문서 명부, 표지판, 웹사이트 기반 서비스 등이 현 시점의 언어지원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3) **수행 항목:** 각 기관은 정기적으로 연방기관의 LEP 서비스와 LEP 정책, 계획, 관례 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계획표를 작성함. 또한 이러한 규정을 수행하는 일차 단계로 본 공지사항이 공표된 일자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귀 기관이 개선한 LEP 계획과 정기적 LEP 계획 재평가 예상 계획표 및 관련 서류를 법무부 민권국의 연방조정 및 규정준수과에 제출해야 함.

구체적 내용: 요청한 정보는 연방조정 및 규정준수과로 보낼 수 있음.
주소: Federal Coordination and Compliance Section, 950 Pennsylvania Avenue, NW (NW Bldg), Washington, D.C. 20530.
수취인: Christine Stoneman and Bharathi Venkatraman. 동 정보를 전자메일로 보낼 수도 있음. 전자우편 주소:
christine.stoneman@usdoj.gov 또는
bharathi.a.venkatraman@usdoj.gov. 참고로, 모 기관이 규정된 계획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체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현재의 언어지원 필요 및 수요를 확실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언어지원 대상 언어에 대한 조사/재조사를 더 자주 하는 것을 불허해서는 안 됨.

- (4) **수행 항목:** 연방기관들은 자체 직원들이 LEP 연락 방법을 능숙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보증해야 함.

구체적 내용: 각 기관의 직원들은 일반 업무 이외에, LEP 연락 상태를 확인하고 LEP 개인들의 모국어를 판단하여 이용 가능한 옵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대면, 전자방식, 인쇄물 및 기타 방식을 통한 자체 기관과 LEP 개인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함.

- (5) **수행 항목:** 정부기관들은 자체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LEP 커뮤니티에 전달 가능한 방식을 통해 자체 기관의 LEP 정책 및 LEP 언어지원과 관련된 발전 현황 등을 대중에게 통보해야 함.

구체적 내용: LEP 언어지원 정보를 홍보하는 방법에는 자체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시, 인쇄물 또는 방송을 이용한 통보, ‘타운홀 (주민회합)’ 형식의 모임에서 관련 정보 배포, 대언론 공식 발표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이에 국한되지 않음). 각 기관은 자체 기관의 정보기술 전문가, 민권 담당자, 홍보담당자 등의 자문을 구해 LEP 커뮤니티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다차원 전략을 개발해야 함.

- (6) **수행 항목:** 직원 고용 기준을 고려할 때, 각 기관은 특정 직무 수행 또는 자체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구사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평가해야 함.

구체적 내용: 자체 기관은 특정 구인 광고 및 직무 설명에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구사 수준 등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 자체 기관에 유익한지 안 한지 결정함.

- (7) **수행 항목:** 서류 번역에 있어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연방정부 용어를 표준화하고 대량 분포용 서류의

전문 번역의 정확성 및 품질에 대한 커뮤니티의 반응을 알아보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함.

구체적 내용: 각 기관은 고품질 번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관 간의 협력과 공통자원관리 (clearinghouse)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연방기관 통합 작업그룹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과제이긴 하지만, 번역 품질을 확실하게 하는 것 역시 똑같이 중요함 –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각 기관은 커뮤니티 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번역을 피해야 함. 대신, 커뮤니티의 의견을, 전문 번역업체의 번역이 커뮤니티의 필요에 맞게, 또 번역물을 읽을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용할 수 있음.

(8) **수행 항목:** 연방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재정보조 수혜단체 안내서를 작성해야 함.

구체적 내용: 각 기관은 법무부 연방재정보조 수혜단체 안내서와 LEP.gov 를 참고하여 (둘 다 아래의 ‘참고 자료’ 단원에 게시되었음) 안내서 견본을 보기 바람. 각 기관은 연방재정보조 수혜단체 안내서를 법무부 민권국 연방조정 및 규정준수과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주소: Federal Coordination and Compliance Section, 950 Pennsylvania Avenue, NW (NW Bldg), Washington, D.C. 20530.
수취인: Christine Stoneman and Bharathi Venkatraman. 연방재정보조 수혜단체 안내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음. 전자우편 주소:
christine.stoneman@usdoj.gov 또는
bharathi.a.venkatraman@usdoj.gov.

참고 자료:

행정명령 제 13166 호 (Executive Order 13166):
<http://www.justice.gov/crt/cor/Pubs/eolep.pdf>

법무부 LEP 안내서(DOJ LEP Guidance):
<http://www.justice.gov/crt/cor/lep/DOJFinLEPFRJun182002.php>

연방기관 통합 작업그룹 LEP 언어지원 서비스 웹사이트:
<http://www.lep.gov>

2006 년 연방기관 언어지원 설문조사 결과 상위 응답 내용:
http://www.lep.gov/resources/2008_Conference_Materials/TopTips.pdf

2006년 언어지원 설문조사:

http://www.lep.gov/resources/2008_Conference_Materials/FedLangAccessSurvey.pdf

GSA 언어지원 서비스 계획표:

<http://www.gsa.gov/portal/content/104610>

내가 구사하는 언어 식별 카드(I Speak Language Identification flashcards):

<http://www.lep.gov/ISpeakCards2004.pdf>

LEP 권리 설명 책자(LEP rights brochure):

http://www.lep.gov/resources/lep_aug2005.pdf